

- “특별요양비의 지급 결정에 대하여”

특별요양비의 지급 결정을 알려드리는 문서입니다. 의료비를 의료기관 등의 창구에서 일단 전액을 부담하시게 되어 있습니다. (18세가 된 날 이후 첫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피보험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)

납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또는 보험료 납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시모노 세키시청 보험연금과 징수계(083-231-1689)에 문의해 주십시오.